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서울 도심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개발 수요가 집중된 지역으로, 이를
정비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일반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에
한해 일반 용적률보다 높은 800%까지 적용을 허용해 왔습니다.

○ 그러나 2024년 10월 14일 시행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따라 서울
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본 용적률이 종전 600%
에서 660%로 상향 조정된 반면,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
용적률 상한은 여전히 800%로 유지되고 있어, 정비사업 촉진 및 다른
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시 용적률 완화의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.

○ 아울러 도심부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최대
880%까지 허용되지만, 도심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800%에
제한되어 동일 용도지역 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본 개정안은 도심부 일반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현행 800%에서 880%로 상향하여, 도심부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강북·강남 간 균형발전 및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,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